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구상 청구 및 조치명령 근거 등
신설〉

■ 이언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846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가.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구상권 및 조치명령 근거 신설	3
나.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부실벌점 근거 신설	13
다. 연체금 부과 체계 개선 및 천재지변 시 부담금 경감	15
라. 부칙	1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언주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30.
3. 회부연월일 : 2026. 3.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해방지의무자에게 광해방지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폐광산 광해방지사업 등에서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였음에도 광해방지의무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입 비용을 구상·환수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비용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광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광해방지의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예방조치의 신속성 및 집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고, 부실시공·안전관리 소홀·불법 하도급 등 위반행위를 체계적으로 억제·관리할 장치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광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비용을 우선 부담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부담한 비용을 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폐광산 등에서 광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조치명령 및 불이행 시 대집행 근거를 신설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및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부실 측정·별점 부과 및 관리체계를 도입하며, 부담금 납부기일 연기 근거를 신설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광해방지사업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10조의2·제15조의2·제24조제6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가.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구상권 및 조치명령 근거 신설

개정안은 광해방지의무자가 자력 부족 및 이행지연 등으로 광해의 적기 복구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우선 비용을 부담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한 후 관련 비용을 광해방지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제4항),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조치명령 근거를 신설하여 광해방지의무자의 복구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광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우선 부담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선 부담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u>
<u><신설></u>	<u>제10조의2(광해방지명령 등) ① 산업통상</u>

현행	개정안
제47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신설> 2. 3. (생략)	<u>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광산에서 광해가 발생하였거나 광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u> 1. 제12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2. 그 밖에 광해방지에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광해방지의무자는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의 결과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제47조(벌칙)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3.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조제7호1)에 따르면 광해방지의무자는 ① 「광업법」 제42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와 ② 휴지광산(休止)광산 및 폐광산(廢鑛山)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를 의미함.

현행법 제10조²⁾제1항은 광해방지의무자에 광해를 방지할 책임을 선언적으로 부여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광해방지의무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 휴광 및 폐광 당시에 발생한 광해의 방지, 폐광 후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와 이를 위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구체적인 비용 산정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³⁾를 살펴보면, 광해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광해방지의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광업법」 제42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나.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① 광해방지의무자는 광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② 광해방지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
2. 휴광 및 폐광 당시에 발생한 광해의 방지
3. 폐광 후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와 이를 위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광산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③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승계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중전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발생한 광해방지책임을 승계한다.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 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이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인 광해방지의무자: 100분의 20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이하 “중기업”이라 한다)인 광해방지의무자: 100분의 30

방지실시계획(법 제8조제3항)이나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0의 범위 내에서 광해방지의 무자가 비용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광해방지의무자가 자력 부족 및 이행지연 등으로 인하여 광해의 적기 복구를 실시하지 않아 국가가 광해방지의무자 대신 사업을 시행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 청구권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원활한 광해방지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한, 「광산안전법」 제18조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였던 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광업권이 소멸한 후라도 3년간은 이들에 대하여 광업을 경영하였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광업권 소멸 후 3년간만 조치명령이 가능하여 3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광해방지를 위한 행정 수단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음.

다. 그 밖의 광해방지의무자: 100분의 40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100

가. 산림복구사업

나. 토지복구사업

다.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 당시 비용 전액을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광해방지사업

이에 안 제10조제4항은 광해방지의무자가 현행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해방지 관련 사업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광해방지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관련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기에 광해 복구를 달성하고 관련 국가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10조의2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광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인 광해방지의무자에게 광해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광산피해의 신속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 제10조제3항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승계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발생한 광해방지책임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의 광해방지의무자가 광해방지 사업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조항에 따라 다른 자에게 광해방지책임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광해방지의무자보다 지위승계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법문언에 반영하여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10조제4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우선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구상을 청구하는 절차로 진입하기 위한 선제 조건으로 광해방지의무자가 광해방지 사업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광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일 것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우선하여 광해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비용을 개정안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에게 구상 청구하게 될 경우 ① 광해방지의무자의 광해방지 사업 관련 비용부담 미이행, ② 광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지 여부 외에도 ③ 비용부담 미이행과 광해의 발생 우려 간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런데, 광해방지의무자의 비용 부담 미이행이 광해의 발생 우려로 이어졌는지 여부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입증을 둘러싼 국가와 광해방지의무자 간 의견 대립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추상적인 인과관계를 구상 청구의 요건으로 적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실제로, 유사 입법례인 「토지환경보전법」⁴⁾을 살펴보면,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토양정밀조사를 한 후 토양정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비용을 해당 정화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화책임자의 의무 불이행과 환경오염 피해 발생 우려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상청구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

셋째, 안 제10조의2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폐광산에서 광해가 발생하였거나 광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광해방지의무자에게 현행법 제12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제1호)이나 그

4) <비교 입법례>

「토지환경보전법」

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한 후 토양정화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인하여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가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淨化責任者, 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인 경우

2.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정화책임자와 토양정화의 시기, 면적 및 비용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토양정화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토양정화의 시기 및 기간

2. 토양정화 대상 토지의 소재지

3. 토양정화 대상 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정밀조사 또는 토양정화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정화책임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밖에 광해방지에 필요한 조치(제2호)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안 제2호의 규정은 발생 장소, 원인, 피해 형태 및 위해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광해의 특성상 조치명령의 세부 유형을 법률에 모두 예측하여 열거하기가 어려운 사정 때문인 것으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이러한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 제47조제1의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됨.

이를 고려하면, 안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의 범위를 “그 밖에 광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로서 정당한 명령의 범위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게 규정하는 것은 행정청과 광해방지의무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넷째, 현행법상 광해방지의무자의 부담금 납부 및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관련 일련의 절차는 광해방지의무자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와 같은 의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광해방지 사업의 시행 및 관련 비용의 분담에 관한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

로 이해됨.

다만, 이와 같은 취지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광해방지의무자의 최초 특정 및 광해방지의무의 범위 설정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조정·고려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한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측면이 있음.

특히 현행법 제2조제7호에서 광해방지의무자를 ①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② 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광해방지책임을 선언적으로 부과하고 있을 뿐, 개정안은 무과실책임,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행위로 인한 광해의 발생 가능성, 선의의 승계인에 대한 예외적 사항 등 유사 입법례⁵⁾에서 정당한 의무

5) <비교 입법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投棄)·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
3. 합병·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1996년 1월 6일 이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신이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과를 위해 고려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1.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해당 토지를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수한 경우
 - 3.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4. 해당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중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신이 해당 토양오염 발생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는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정화등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 ⑦ < 생략 >

나.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부실벌점 근거 신설

개정안은 부실시공, 안전관리 소홀, 불법하도급 등 위반 경중에 따라 벌점을 부과·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며(안 제15조의2 신설), 이와 같은 신규 업무를 포함하여 개정안에 규정된 업무의 일부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5조의2(광해방지사업의 부실 추정)</u> <u>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광해방지사업을 위탁받은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u> <u>1. 전문광해방지사업자</u> <u>2.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고용된 광해방지기술인</u> <u>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공단이 시행하는 광해방지사업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u> <u>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 각</u>

현행	개정안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략)	<u>호의 자에게 준 별점을 공개하여야 한다.</u>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u>실적증명서 발급,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신청,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과 관련된 업무</u>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별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 ----- ----- ----- ----- -----

현행법 제15조⁶⁾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하도급 제한 의무 등의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와 같은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로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광해방지의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광업법」 제42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나,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다양한 사업수행 방식별 사업 및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감독하고 제고하는 데에 효과적인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은 광해방지사업의 부실시공, 안전관리 소홀 등에 대한 부실벌점제를 도입하여 사업품질 및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연체금 부과 체계 개선 및 천재지변 시 부담금 경감

개정안은 광해방지부담금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경영상 위기 등으로 인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24조제6항),

체납된 광해방지부담금의 100분의 1을 월 단위 연체금으로 산정하고 있는 현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일(日) 단위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되 가산금 총액 상한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 개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① ~ ⑤ (생략) <신설>	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납부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납부기일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⑦ (생략)	⑦·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26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u>채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u>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일(日) 단위로 산정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 ----- -----

현행	개정안
③ <u>채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채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u> ④ ~ ⑥ (생략)	-----. ③ <u>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합계액은 채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u> ④ ~ ⑥ (현행과 같음)

2022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고, 전 부처 부담금 제도 조사 결과 문제점으로 ① 부과금 미납 시 과도한 연체금 편차, ② 고율 연체금 정책효과 미흡, ③ 연체일수와 무관한 불합리한 연체금 산정, ④ 법률 근거 없는 연체금 징수, ⑤ 천재지변 등 연체 구제수단 미비를 제시하였음.

이 중 “연체일수와 무관한 불합리한 연체금 산정”과 관련하여, 공공부과금 연체금 산정방식을 1일 단위, 고정 정액, 고정 정액에 1일 단위 가산금 부과, 고정 정액에 월 단위 가산금 부과로 세분화하고, 일할 계산이 아닌 고정액의 경우는 부주의로 하루만 연체하여도 한달치 또는 연체금 총액이 즉시 부과되어 단기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음.

또한, “천재지변 등 납부부담 완화 정책 미흡”과 관련하여, 공공부과금 119개 중 82개(69%)가 법령상 천재지변, 감염병 등에 대한 구제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지원정책 추진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이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 제26조제2항은 체납된 광해방지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체납기간에 상관없이 고정액으로 부과하고, 이후 연체기간이 월단위를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을 추가로 가산금으로 징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단기 연체자에게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가산금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또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체납이 발생한 연체자에 대한 입법적 고려가 현행법상 미비한 상황임.

이를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를 경우 고정액·월단위 연체금 산정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천재지변·감염병 등의 상황 시 원금 및 연체금 부담을 일정 수준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금 관리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산정 시 적용 비율에 대해 법

률에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아니한 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입법 형식에 따를 경우 현행보다 단기 연체자의 부담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가 법문언만으로는 보장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일 단위 부담금의 적용 이율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⁷⁾을 검토하거나 시행령 위임 취지를 법률에 명시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라. 부칙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정하고, 부담금 및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에 관하여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

7) <비교 입법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① 시·도지사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정에 따른다. 제3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안 제10조는 광해방지의무자가 광해방지 사업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국가가 우선 사업 시행 후 비용을 구상 청구하는 제도나 제10조의2에 따른 광해방지명령 및 대집행 제도의 구체적인 적용시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부칙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특히, 두 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광해방지의무자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이전 폐광이 이루어진 광산의 광해방지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68